

IFRS in Focus

IASB, 위험회피회계 공개초안 발표

목차

- 제안사항
- 적용범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효과
-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공시
- 시행일과 경과규정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2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요점

- 공개초안은 새로운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 모형(general hedge accounting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포함하여 새로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 모형(portfolio hedge accounting model)에 대한 공개초안은 2011년 중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IAS 39의 기본 개념은 유지된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할 수 있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효과 평가규정과 관련하여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존 IAS 39 규정보다 더 완화된다.
-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전진적 평가('forward looking' test)로 한정되며 명확한 기준(bright line)은 없다 (다시 말하면, 상쇄효과가 80%~125%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급적 위험회피효과 평가(retrospective hedge effectiveness test)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많은 경우에 계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한다. (여전히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필요는 있음)
-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 모두 위험요소(risk component)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허용된다.
- 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옵션 시간가치 변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행 IFRS에 비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감소될 것이다.
-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 순포지션(net position)과 항목의 집합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가 확대된다.
- 특정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법(basis adjustment)'이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고) 강제된다.

- 위험회피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가상 파생상품(hypothetical derivative)을 재설정하지 않고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
-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익스포저(exposure)와 결합되어 있다면, 파생상품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안사항 (proposals)

2010년 12월 9일, IASB는 공개초안(이하 ED라고 함) 'ED/2010/13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를 발표하였다. 위험회피회계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이다. ED에서 제안된 사항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예: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예: 예상매출) 사이의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 중 다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재무제표에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 중 다수는 ED의 제안사항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ED에 대한 의견수렴기한은 2011년 3월 9일이며, 최종 기준서는 2011년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적용범위 (scope)

이번 ED는 IASB가 '일반적인(*general*)' 위험회피회계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대해서는 2011년 중 별도의 ED가 발표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대한 ED는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매크로 위험회피회계 모형(*macro hedge accounting model*)이라고도 함)에 대한 새로운 제안사항을 포함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소비자 금융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보다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방형 포트폴리오(*open portfolio*,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관계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폐쇄형 포트폴리오(*closed portfolio*)에 속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대상금액은 개별적으로 식별되고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지정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어떠한 변동도 단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된다.

이번 ED는 일반적으로 '순투자위험회피(*net investment hedge*)'라고 불리는 해외사업장 순투자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에 특별한 변경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 평가규정에 대하여 제안된 변경내용은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므로 순투자위험회피에서의 위험회피효과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hedged items*)

이번 제안사항에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유형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파생상품으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을 회피 (*hedging a derivative with a derivative*)

익스포저(*exposure*)와 파생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함께 지정할 수 있다. ED에서 제안한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실무에서 파생상품이 포함된 통합(*aggregate*) 또는 '합성(*synthetic*)' 익스포저는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시점에 다른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외화(FC*1)로 표시된 상품의 예상 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가정하자. 기업은 앞으로 2년 후 FC로 표시된 상품가격의 변동위험을 단위당 FC100로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1년 후 기업은 외화위험을 회피하기를 원한다.

그 시점에서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예상 매입과 상품 파생상품(다시 말하면, 단위당 FC100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통합 또는 합성 외화위험노출)이다. ED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익스포저는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것이나 현행 IAS 39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하지 않다.

*1 이 newsletter에서 FC는 외화 단위로 사용되며 CU는 기능통화 단위로 사용된다.

논평

ED는 당초의 위험회피가 위험회피관계로 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고 단일 익스포저 내의 모든 위험회피가 동일한 위험회피 회계 유형이어야 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다시 말하면, 당초의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가 될 수 있고 후속적으로 통합 익스포저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위험회피 결합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어떤 후속 위험회피가 당초의 위험회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느 정도 복잡한 위험회피회계 시나리오가 생길 여지가 있을 것이다.

위험요소의 위험회피 (hedging risk components)

ED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 모두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요소에 대한 규정을 일지시키고 있다. 어떤 항목의 위험요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하다.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separately identifiable)
-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reliably measurable)

현행 IAS 39에 따르면 이러한 유연성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비금융상품(예: 예상 상품매입)인 경우에는 오직 외화위험만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요소로 허용된다. ED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용리스에서 리스료가 인플레이션과 계약상 연계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 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논평

위험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의 일부가 다른 가격이나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특정 가격결정공식에 근거하여 항목을 매입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매입가격의 일부를 분리하여 그 부분만 지정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위험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미래 시장가격으로 항목을 매입하는 예상거래가 있는 경우) 시장가격의 일부를 식별할 수 있는 측정요소로 분리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FVTOCI)으로 지정된 투자지분상품 (equity instruments designated a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2009년 11월 IFRS 9이 발표되었을 때, IFRS 9에서는 일부 투자지분상품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FVTOCI) 범주'를 도입하였다. 지분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영구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인식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모든 차익이나 차손은 (매각되거나 손상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결코 재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ED는 이러한 투자지분상품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논평

FVTOCI로 지정된 외화 투자지분상품 보유자는 주가변동위험이나 외화위험을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배당금수익은 다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예를 들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과 순포지션 (groups and net positions)

ED는 위험관리목적상 항목의 집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통합하여 하나의 집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은 순포지션 (다시 말하면, 상쇄되는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을 가지는 항목의 집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순포지션 (다시 말하면, 상쇄되는 현금흐름을 가지는 항목의 집합)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에 노출된 상쇄 현금흐름은 동일한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순포지션의 사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동으로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확정매입계약과 확정매출계약의 집합
- 하나 이상의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공동으로 회피하는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집합
- 하나 이상의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공동으로 회피하는 변동금리부 자산과 변동금리부 부채의 집합 (이자가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 단일의 통화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외화위험을 공동으로 회피하며 동일한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매출과 예상 비용의 집합 (예를 들어, 기업이 분기마다 중단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분기 보고기간)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하지 않은 순포지션의 사례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단일의 통화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외화위험을 공동으로 회피하지만 다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매출과 예상 비용의 집합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순포지션을 회피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험회피수단 (hedging instruments)

ED는 순매도옵션을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FVTPL)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공정가치옵션(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도 포함한다. 또한, 외화위험회피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IFRS 9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 그 결과,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금융자산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 전체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 전체는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옵션 (financial options)

ED는 금융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로 지정한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가치 요소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과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 가상 옵션(hypothetical option)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회계처리의 두 번째 단

계는 해당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류의 근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성격에 따른다.

- 거래 관련(transaction related)
- 기간 관련(time period related)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된 누적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한다.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경우, 다시 말하면 옵션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특정 항목의 위험회피에 옵션을 이용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과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 가상의 옵션을 참고하여 결정함)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상각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내부파생상품(internal derivatives)

IAS 39와 동일하게 ED에서도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체결된 계약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논평

기업이 내부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순 위험을 외부 파생상품으로 제거한다면, 내부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을 외부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D는 IAS 39보다 (순포지션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집합을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항목의 집합에 적용되는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변경하고 있다.

위험회피효과(hedge effectiveness)

위험회피효과 기준: 우연이 아닌 상쇄 (effectiveness threshold: other than accidental offset)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몇몇 조건은 위험회피관계의 유효성과 계속 관련되어 있다.

ED는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highly effective)'이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IAS 39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쇄효과가 80%~125%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대체한다. 그 대신, ED는 위험회피관계가 '우연이 아닌 상쇄(other than an accidental offset)'를 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고정금리부 대여금의 기준금리(benchmark interest rate) 요소 변동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을 가정하자. 스왑의 고정금리 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기업은 지정된 위험회피가 우연이 아닌 상쇄효과를 달성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위험회피를 지정한 이후 스왑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의 상쇄는 단지 우연한 상쇄에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복제되지 않는 신용위험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논평

ED에는 '우연이 아닌 상쇄(other than accidental offset)'의 정의나 상쇄를 정의하는 수준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

피수단 간의 상관관계 수준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에 적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목적 (objective of the hedge effectiveness assessment)

'우연이 아닌 상쇄' 요건에 추가하여 위험회피관계는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목적은 예상되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적절한 비중(위험회피비율(hedge ratio)이라고도 함)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이 결정한 비중은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논평

상기 규정은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다 높은 상쇄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위험회피수단을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상쇄효과를 가져오는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은 상기 위험회피수단을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주어진 위험회피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해야 한다.

계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vs qualitative analysis)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우연이 아닌 상쇄' 달성과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목적' 부합, 상기 참고)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량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안사항에서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에 적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등급(grade) 상품의 예상 매입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을 가정하자. 그러나, 이러한 등급에 대한 선도계약을 용이하게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등급과는 다른 '기준(benchmark)' 등급에 근거하는 선도계약을 이용한다. 이는 베이스스 위험(basis risk)을 야기한다. 기준등급은 기업이 매입하고자 하는 상품 등급의 요소가 아니다. 기업은 이러한 베이스스 위험의 크기가 변동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한다. 기업은 두 등급 간의 베이스스 위험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계약에 대응하여 지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적절한 비중(즉, 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계량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평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계량적 분석이 요구되는지의 여부와 (계량적 분석을 수행한다면) 계량적 분석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빈도 (frequency of assessments)

위험회피효과 평가는 전진적(forward looking)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위험회피효과 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행되어야 한다.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prospective test vs retrospective test)

IAS 39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진적 평가(forward looking assessment, prospective test)에 추가하여 소급적 평가(backward looking assessment, retrospective test)도 수행해야 한다. ED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목적상 소급적 평가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IAS 39와는 다르게 단순히 위험회피가 당초 기대하였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보고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고기간 말에 전진적 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위험회피에 비교과적인 부분의 측정 (measurement of hedge effectiveness)

IAS 39와 마찬가지로 위험회피에 비교과적인 부분을 (계량적 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changes to a hedging relationship)

ED는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위험관리목적의 변경 (a change in the risk management objective)
-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의 변경 (a change in the expectation of hedge effectiveness)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 (a change to the hedged item)
- 위험회피수단의 변경 (a change to the hedging instrument)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에 변경이 있거나 위험회피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상쇄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가 변경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목적'(상기 참고)에 계속 부합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비중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관계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베이스스 위험의 예상 행태는 위험회피기간 동안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비중의 변경은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 비중의 증가 또는 감소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ED는 이러한 변경은 당초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조정된(rebalanced)' 위험회피관계를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대신, '재조정' 후에 남아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는 위험회피가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되며, 재조정 후에 더 이상 위험회피되지 않은 부분은 위험회피가 중단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논평

위험회피관계를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위험회피효과 평가의 목적에 계속 부합하기 어렵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격성에 변동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highly probable) 상품 100단위의 예상 매입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가정하자.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기업의 매입규정이 변경되어 단지 90단위의 상품만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10단위와 관련된 위험회피관계는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하지 않다. 이러한 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10 단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강제적으로) 중단되지만 나머지 90단위는 변경 없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된다.

논평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라도 변경되는 경우 종전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관계를 재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로 IAS 39 적용으로 야기된 불합리한 회계불일치의 일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측정에 사용된 가상 파생상품(hypothetical derivative)의 재설정을 회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몇몇의 경우 IAS 39에 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당초의 가상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은 가상 파생상품 조건의 '재설정' 없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맞추어 감소된다). 또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를 당초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위험회피하는 경우, 종전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철회는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금액(위험회피가 지속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을 조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일부만 더 이상 위험회피하지 않는 경우의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위험회피)

기존 위험회피의 지정철회(designation of existing hedges)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없었고 위험회피와 관련된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하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자 선택한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IAS 39 위험회피회계 모형에서 변경된 것이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fair value hedge accounting)

ED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fair value hedge adjustment,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나타냄)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바로 다음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될 것이다. 그러나, IAS 39에 따르면 위험회피조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다(그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기준과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혼재할 수 있음). ED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무제표 표시는 공정가치 측정을 분리함으로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원래의 측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ED에서 제안한 다른 변경으로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IAS 39와는 다르다.

사례

액면금액이 CU100,000인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으로 회피된다. 금융부채의 발행일(연차보고기간 개시일)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며 모든 이자는 보고기간말에 결제된다. 보고기간말 스왑의 차익은 CU5,000이다. 이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으로 인한 차손인 CU6,000을 부분적으로 상쇄한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CU1,000이다)

ED의 제안내용에 따라 위험회피기간 중 첫 번째 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다음 항목과 잔액을 포함할 것이다. 항목에 대한 기술은 단지 예시 목적이다.

재무상태표

이자율스왑	5,000
금융부채	(100,000)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fair value hedge adjustment)	(6,000)

손익계산서

금융부채 이자비용	(X)*2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차손)	(1,000)

기타포괄손익계산서

위험회피대상항목(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6,000)
-------------------------	---------

위험회피수단(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	5,000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1,000

*2 이자비용 항목에는 금융부채의 고정금리 지급액과 이자율스왑의 순 이자발생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논평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항목의 금액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시점에 제거됨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cash flow hedge accounting)

‘lower of test’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ED는 'lower of test'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자본으로 이연할 수 있는 위험회피수단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이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누적 손익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현재가치)

장부금액 조정법 (basis adjustment)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의 결과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ED는 기업이 '장부금액 조정법(basis adjustment)'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cash flow hedge reserve)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제거하여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의 일부로 인식한다.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선택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다시 말하면,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이연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별도 항목으로 재분류되며, 별도 항목에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금액이 포함될 것임)에도 적용된다.

이는 기업이 장부금액을 조정하거나 누적 손익을 자본에 계속 유지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예상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IAS 39에서 변경된 것이다.

공시 (disclosures)

ED의 공시규정은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이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n entity's risk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amount, timing and uncertainty of future cash flows)
-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제표 본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that hedge accounting has on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ED는 기업이 회피하기로 결정한 위험과 적용한 위험회피회계 유형에 근거한 위험의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안사항은 위험노출(risk exposure)에 대한 계량적 공시와 위험회피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D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결과로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된 금액에 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논평

상기 제안사항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위험회피회계의 영향이 보다 분명하고 투명하게 공시될 것이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transition and effective date)

ED가 마무리되면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규정은 IFRS 9의 일부를 구성한다.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규정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IFRS 9의 다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에만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D가 마무리되면 제안사항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가 될 것이며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기준서는 전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기준서 채택일로부터 새로운 모형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채택일까지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 IAS 39에 따라 지정되고 새로운 모형에서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는 기존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논평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새로운 모형과 기존 IAS 39 모형이 서로 다르다.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 이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IAS 39에 따른 기존의 위험회피관계를 적절하게 변경시키는 프로세스가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서 채택일까지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준서 채택일 이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기준서 채택일 이후의 위험회피관계 지정은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준서 채택일까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전에 인식되었던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금액의 상각이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사용된 가상 파생상품의 재설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종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Kil Woo Lee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China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Australia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Japan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United States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Canada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LATCO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elgium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Denmark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South Africa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Russia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France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Netherland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